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4가단123122 면책확인의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피 고 주식회사 B철강

대표이사 이△△

변 론 종 결 2015. 4. 7.

판 결 선 고 2015. 4. 28.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134××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0. 이 법원(2004가단134××)으로부터 "원고는 권리□□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1년경까지 발생한 물품잔대금 3,55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행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 8.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12. 신용정보조회서, 독촉장 및 소장에 의하여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하단71××, 2013하면71××)으로부터 2013. 10. 28.자 파산선고 및 2014. 4. 2.자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25.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타채163××)으로부터 원고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무의 발생시점은 2001년경이므로 원고가 모든 채무를 빼짐없이 기억하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 점, ② 이 사건 채무에 관한 판결은 2004. 7. 공시송달로 확정되어 원고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멸시효만료로 소멸된 채무로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③ 원고는 파산·면책 신청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채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원고가 물품 잔대금 채무인 이 사건 채무를 일부러 채무목록에서 누락시킬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채무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파산·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형원